

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

(이상욱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18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5년 10월 20일
발의자: 이상욱 의원(1명)
찬성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규남,
김길영, 김영철, 김용호,
김원태, 김지향, 김태수,
김형재, 서상열, 이종태,
이희원, 최민규, 허·훈
의원(15명)

1. 주문

- 어린이와 노인, 장애인 등 급식 취약계층의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영양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대통령실과 국회, 정부에 강력히 촉구함.

2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는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25개 자치구에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 있음.
- 센터는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은 어린이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을 통한 위생·영양 관리, 교육, 컨설팅 등을 수행하며, 식중독 예방과 건강증진 등 공공영양관리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.
- 그러나 서울지역 센터 종사자 316명 전원이 위탁기관 소속의 계약직 근로자로, 위탁 기간(3~5년)에 따라 반복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, 고용승계나 정규직 전환 체계가 없어 상시적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음.

- 또한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고, 타 복지시설 영양사나 지방직 공무원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보수체계로 인해 높은 이직률(연평균 30%)과 업무 연속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.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제14조는 센터 근무자의 급여와 운영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2025년 통합가이드라인에서도 지자체의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처우개선을 명시하고 있음.
- 또한 인천광역시는 관련 조례제정 및 예산 매칭을 통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경우 2025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매칭을 통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계획하고 있음.
-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조례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 중이며, 서울시 역시 자치구와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-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을 책임지는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국가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며,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정비 및 예산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.

3. 이송처

- 대통령실, 국회, 식품의약품안전처, 서울특별시장

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

- 2025년 현재 기준 전국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8개소,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160개소가 운영 중이며,
-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전역에 25개 센터를 두고 총 316명의 상근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, 센터 종사자는 모두 영양사, 위생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이지만, 모두 위탁기관 소속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재위탁 시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며, 정규직 전환이나 고용 승계가 보장되지 않는다.
- 특히, 팀원 1호봉 기준 기본급은 2025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, 서울시 생활임금과 비교하면 월 38만 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.
- 이러한 낮은 보수체계는 근속 단절과 높은 이직률(평균 30%)로 이어지고 있으며, 센터의 행정적 공백과 급식 위생·영양 관리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.
- 현재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제14조는 급식관리지원 센터의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
-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, 충청남도 등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

하여 처우 개선비를 제도적으로 지원 및 계획하고 있다.

- 이에 반해 서울시는 조례제정이나 시비 매칭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,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자치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.
- 다만,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며, 서울시 또한 자치구와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근본적인 개선 근거가 미비하므로, 정부와 국회,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표준기준을 마련하고, 지방비 매칭을 포함한 예산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.
- 또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센터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-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어린이와 노인, 장애인 등 급식 취약계층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과 공공영양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대통령실과 국회,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.

2025. 10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